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14 선고 2020가단41345 판결 [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청구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푸르메

담당변호사 윤정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흥우

변 론 종 결 2021. 8. 24.

판 결 선 고 2021. 9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20. 4. 27.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는 D, E 등과 공모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 3,249,000,000원을 받아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. C 등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친밀한 사이인 피고에게 2020. 5. 2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35,000,000원에서 사해행위 후 새롭게 설정된 저당권 설정금액 99,000,000원을 공제한 136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피고는 C와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,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동호

[별지목록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세대주택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동작구

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조 및 면적 : 철근콘크리트조 57.24㎡

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334㎡

대지권의 종류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: 334분의 31.76

- 이 상 -

